

부속서 III

엘살바도르의 유보목록

주해

1. 부속서 III의 엘살바도르 유보목록은 다음을 규정한다.
 - 가. 나호1목부터 5목까지와 다호에 기술된 의무에 대한 엘살바도르의 약속을 제한하거나 명확히 하는 두주
 - 나. 제1절에서는 제11.9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와 합치하지 아니하는 엘살바도르의 기존의 조치
 - 1) 제11.2조(내국민 대우)
 - 2) 제11.3조(최혜국 대우)
 - 3) 제11.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
 - 4) 제11.5조(국경 간 무역), 또는
 - 5) 제11.8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그리고
 - 다. 제2절에서는 제11.9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엘살바도르가 제11.2조(내국민 대우), 제11.3조(최혜국 대우), 제11.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 제11.5조(국경 간 무역) 또는 제11.8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와 합치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조치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또는 더 제한적인 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특정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
2. 제1절의 각 유보항목은 다음의 요소를 규정한다.
 - 가. **분야**는 유보된 일반 분야를 지칭한다.
 - 나. **하위분야**는 유보된 특정 분야를 지칭한다.
 - 다. **관련의무**는 제11.9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열거된 조치(들)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제1항나호에서 언급된 의무(들)를 명시한다.
 - 라. **정부수준**은 열거된 조치(들)를 유지하는 정부수준을 나타낸다.
 - 마. **조치**는 유보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적시한다. 조치 요소에서 인용된 조치는
 - 1) 이 협정의 발효일에 개정, 지속 또는 갱신된 대로의 조치를 말한다. 그리고
 - 2) 그 조치의 권한에 따라, 그리고 이에 합치되게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모든 하위조치를 포함한다. 그리고

- 바. **유보내용**은 조치에 대한 일반적, 비구속적 설명을 제공한다.
3. 제2절의 각 유보항목은 다음의 요소를 규정한다.
- 가. **분야**는 유보된 일반 분야를 지칭한다.
- 나. **하위분야**는 유보된 특정 분야를 지칭한다.
- 다. **관련의무**는 제11.9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그 유보항목에 열거된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제1항다호에서 언급된 의무(들)를 명시한다.
- 라. **정부수준**은 열거된 조치(들)를 유지하는 정부수준을 나타낸다. 그리고
- 마. **유보내용**은 그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의 범위를 규정한다.
4. 제1절의 비합치 조치의 해석에 있어서, 비합치 조치 유보항목의 모든 요소가 고려된다. 비합치 조치는 그 비합치 조치가 취해지는 금융서비스 장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해석된다.
- 가. 조치 요소가, 유보내용 요소의 자유화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 또는 금융서비스 장 부속서의 구체적 약속에 의하여 한정되는 한도에서, 그와 같이 한정된 조치 요소가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 그리고
- 나. 조치 요소가 그렇게 한정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조치 요소와 종합적으로 고려된 그 밖의 요소 간의 불일치가 실질적이고 중대하여 조치 요소가 우선한다고 결론 내리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가 아니면, 조치 요소가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 그렇게 결론 내리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불일치의 한도에서 그 밖의 요소가 우선한다.
5. 제2절의 유보항목에 대하여, 제11.9조제2항(비합치 조치)에 따라, 유보항목의 관련의무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항들은 그 유보항목의 유보내용 요소에 적시된 분야, 하위분야 및 행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6. 엘살바도르가 자국의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서비스 공급자가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자국 영역의 거주자일 것을 요구하는 조치를 유지하는 경우, 제11.2조(내국민 대우), 제11.3조(최혜국 대우), 제11.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 또는 제11.5조(국경 간 무역)에 대하여 부속서 III에서 취하여진 그 조치에 대한 목록은 그 조치의 한도에서 제9.3조(내국민 대우), 제9.4조(최혜국 대우) 및 제9.9조(이행요건)에 대한 비합치 조치로 작용한다.

두주

1. 이 협정상의 이러한 하위분야의 약속은 이 두주 및 아래 제1절 및 제2절에 규정된 제한 및 조건에 따라 수행된다.
2. 제11.4조에 대한 엘살바도르의 약속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융서비스를 공급하고 엘살바도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법적 형태에 대한 비차별적 제한의 적용대상이 된다.¹

¹ 예를 들면, 파트너십 및 단독소유기업은 엘살바도르에서 예치금융기관의 법적 형태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두주는 그 자체로 다른 당사국 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자회사 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거나 달리 제한하는 것을 의도하지 아니한다.

제1절

1.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모든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2조) 최혜국 대우(제11.3조)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1.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보험회사법, 입법령 제844호, 1996.10.10, 제1조, 제6조, 제41조 및 제111조(Ley de Sociedades de Seguros, Decreto Legislativo número 844, 10 de octubre de 1996, Artículos 1, 6, 41 y 111) 보험회사법 규정, 입법령 제44호, 1999.4.20, 제29조 (Reglamento de la Ley de Sociedades de Seguros, Decreto Legislativo número 44, 20 de abril de 1999, Artículo 29)
유보내용	보험회사는 엘살바도르에서 합법적으로 설립되어야 한다. 엘살바도르는 외국 보험회사가 지점을 설립하도록 허용한다. ² 엘살바도르 법에 따라 기업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다음이 주식의 최소 75퍼센트를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가. 엘살바도르의 자연인 또는 중미 국가의 자연인 나. 엘살바도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대주주 또는 파트너가 엘살바도르 자연인 또는 중미 국가의 자연인인 법인 다. 중미 국가의 보험회사 또는 재보험회사, 또는 라. 국제적으로 인정된 평가기관(예: Moody's, A.M. Best 또는 S&P)이 1등급으로 분류한 외국 보험회사 및 재보험회사

² 엘살바도르는 지점 소유주 또는 주주들이 엘살바도르 보험 법규에 설정된 지급능력 및 건전성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2조) 최혜국 대우(제11.3조)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1.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은행법, 입법령 제697호, 1999.9.2, 제5조, 제10조, 제26조, 제27조 및 제150조(Ley de Bancos, Decreto Legislativo número 697, 2 de septiembre de 1999, Artículos 5, 10, 26, 27 y 150)
유보내용	<p>엘살바도르에 설립된 은행은 고정자본이 기명주식으로 발행되고 10인 이상의 파트너가 있는 기업으로 설립 및 운영되어야 한다.</p> <p>엘살바도르에서 합법적으로 설립된 은행의 주식 중 최소 51 퍼센트는 다음 종류의 투자자가 보유하여야 한다.</p> <p>가. 엘살바도르 또는 다른 중미 국가의 국민</p> <p>나. 대주주 또는 파트너가 다음과 같은, 엘살바도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엘살바도르 또는 다른 중미 국가의 국민, 또는 2) 대주주 또는 파트너가 엘살바도르 또는 다른 중미 국가의 국민인, 엘살바도르 법에 따라 설립된 그 밖의 법인 <p>다. 중미 국가의 법에 따라 설립된 다음의 은행</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련 국제 관행에 따라, 그 국가에서 건전성 규제 및 감독 대상인 은행 2) 국제적으로 인정된 위험성 평가기관의 승인을 받은 은행, 그리고 3) 그 국가에서 유효한 법 규정 및 지침을 전적으로 준수하는 은행, 또는 <p>라. 국제적으로 인정된 위험성 평가 기관으로부터 1등급 기관으로 승인되고 그 밖의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는 은행 및 그 밖의 외국 금융기관. 이 요건을 충족하는 지주회사 및 그 밖의 외국 금융기관에도 이 호가 적용된다.</p> <p>엘살바도르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외국 은행 지점은</p>

	<p>다호 또는 라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은행의 지점이어야 한다.</p> <p>엘살바도르에서의 외국 지점 운영은 엘살바도르에서 그 지점들이 보유한 자본에 따라 제한된다.</p> <p>엘살바도르 법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 은행 또는 금융 대기업이 주식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한 은행은 「은행법」(Ley de Bancos)에 명시된 대로 오직 동일한 외국 대기업의 다른 회사와 상호, 자산 또는 기반시설을 공유하거나 공동서비스를 대중에게 제공한다.</p>
--	---

3.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저축신용협동조합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2조) 최혜국 대우(제11.3조)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1.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신용조합 및 저축신용조합법, 입법령 제849호, 2000.2.16, 제155조 및 제157조(Ley de Bancos Cooperativos y Sociedades de Ahorro y Crédito, Decreto Legislativo número 849, 16 de febrero de 2000, Artículos 155 y 157)</p> <p>은행법, 입법령 제697호, 1999.9.2, 제10조(Ley de Bancos, Decreto Legislativo número 697, 2 de septiembre de 1999, Artículo 10)</p> <p>협동조합 일반법, 입법령 제339호, 1986.5.6, 제1조 및 제16조(Ley General de Asociaciones Cooperativas, Decreto Legislativo número 339, 6 de mayo de 1986, Artículos 1 y 16), 그리고</p> <p>상법, 입법령 제671호, 1970.5.8, 제17조(Código de Comercio Decreto Legislativo número 671, 8 de mayo de 1970, Artículo 17)</p>
유보내용	<p>저축신용기관은 금융서비스 분야, 은행서비스 하위분야와 관련된 상기 유보항목에 은행에 대하여 규정된 소유요건과 동일한 요건을 따른다.</p> <p>저축신용기관 및 협동조합은 엘살바도르에 설립되어야 한다.</p> <p>「은행법」(Ley de Bancos) 제10조에 규정된 지분제한은 자국법에 따라 확대된 법적 성격을 지니고 엘살바도르의 「비영리 협회 및재단법」(Ley de Asociaciones y Fundaciones sin Fines de Lucro)에 따라 국토개발부(Ministerio de Gobernación y Desarrollo Territorial)의 비영리 협회 및 재단 명부(Registro de Asociaciones y Fundaciones sin Fines de Lucro)에 적절하게 기재된 외국 비영리 재단 및 협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p>

4.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환전국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2조)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1.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환전법, 입법령 제480호, 1990.4.5, 제4조(Ley de Casas de Cambio de Moneda Extranjera, Decreto Legislativo número 480, 5 de abril de 1990, Artículo 4)
유보내용	<p>환전국은 엘살바도르에서 주식회사(S.A.)로 설립되어야 한다. 환전국 주식은 국가금융기관 또는 엘살바도르 국민이나 엘살바도르인으로만 구성된 법인의 자산이다.</p> <p>환전국은 외국환, 은행 환어음, 여행자 수표 및 외국통화로 표시된 그 밖의 지급수단의 매입 및 매도로 시장의 수요 및 공급을 결정하는 것이 통상 업무인 회사이다.</p> <p>주식회사(S.A.)는 주식회사로서 주주들이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책임을 부담한다. 법인명에는 제한이 없으나 “Sociedad Anónima” 또는 그 약자인 “S.A.”를 바로 뒤에 붙여 다른 모든 기존의 기업들과 구분한다.</p>

5.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모든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2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은행법, 입법령 제697호, 1999.9.2, 제156조(Ley del Bancos, Decreto Legislativo número 697, 2 de septiembre de 1999, Artículo 156) 농업발전은행법, 입법령 제312호, 1973.4.10, 제14조(Ley del Banco de Fomento Agropecuario, Decreto Legislativo número 312, 10 de abril de 1973, Artículo 14)
유보내용	농업발전은행(The Banco de Fomento Agropecuario)은 예금보호국(Instituto de Garantía de Depósitos) 회원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6.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모든 하위분야
관련의무	최혜국 대우(제11.3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유보내용 요소에 규정된 대로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및 파나마 간의 자유무역협정 (Tratado de Libre Comercio entre Costa Rica, El Salvador, Guatemala, Honduras, Nicaragua y Panamá)
유보내용	파나마는 금융서비스 장의 목적상 중미 당사국으로 취급될 수 있다.

제2절

7.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보험을 제외한 모든 하위분야
관련의무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1.4조)
유보내용	금융서비스 엘살바도르는 엘살바도르 내에서 은행 또는 보험회사로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을 제외한 외국 금융기관이 엘살바도르에 설립되도록 요구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8.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신용정보내역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2조) 최혜국 대우(제11.3조)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1.4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8조)
유보내용	엘살바도르는 신용정보내역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9.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뮤추얼펀드 운용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2조) 최혜국 대우(제11.3조)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1.4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8조)
유보내용	엘살바도르는 뮤추얼펀드 운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10.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전자화폐 제공사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2조) 최혜국 대우(제11.3조)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1.4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8조)
유보내용	엘살바도르는 전자화폐 제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11.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증권시장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2조) 최혜국 대우(제11.3조)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1.4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8조)
유보내용	엘살바도르는 증권시장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12.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연금 기금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2조) 최혜국 대우(제11.3조)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1.4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8조)
유보내용	엘살바도르는 연금 기금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13.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모든 형태의 여신
관련의무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1.4조)
유보내용	엘살바도르는 고리대금 방지를 위한 모든 형태의 여신에 대한 금리 상한선 설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